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족보상등 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1. 업무상의 재해에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그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

2. 망인은 광양제철소의 수질관리반에서 근무하면서 수처리업무와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행하여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회사 도장 작업 중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과 함께 작용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제2부, 1997. 2. 28. 판결 96누14883 상고기각
- 판시사항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참조조문 : 광주고등법원 1996. 8. 29. 선고 94구 4430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소외 망 신○○는 1980. 7. 16. 피고 보조 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항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 10. 1. 용수처리공과 화학분석공의 직무를 수처리직으로 통합된 후부터는 수처리직에 근무하였고, 1991. 7. 8. 참

가인 회사의 광양제철소로 전근하여 사망할 때까지도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직에 종사하여 온 사실, 참가인 회사가 1987. 10. 1. 용수처리공과 화학분석공의 직무를 수처리직으로 통합한 것은 수질관리반 전직원이 순수처리 업무와 수질분석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따라 수처리직의 직무훈련에 있어서 순수장치운전, 수질관리운전, 화학분석 등을 모두 함께 교육하였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수시로 서로의 업무를 교체, 병행해 왔으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력에 있어서 수처리 업무와 수질분석 업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어야 했던 사실, 통상 수질관리반에서는 자동계측용 PH meter에 부착된 셀(cell)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나, 설비관리반에서 보일러의 유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빌려 갔다가 반환하는 유리용기의 유분을 세척하는 경우 등에 벤젠을 사용하여 왔고, 또한 1993. 3. 8. 부터 1993. 5. 12. 까지는 거의 모든 반원들이 업무 중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에 새공장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처리실 등의 청소 및 도색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때 페인트작업 후 옷에 묻은 페인트의 세척에 벤젠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위 기간 중 23일 정도 도장작업을 하였고, 그 당시 벤젠 등 화학약품의 수불, 보관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망인은 광양제철소의 수질관리반에서 근무하면서 수처리업무와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행하여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회사 도장작업 중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수행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과 함께 작용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쉬운데 만성폭로시에는 백혈구가 감소하는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위험인자는 벤젠과 함께 유전, 방사능, 고압전기, 바이러스, 다른 발암화학물질 등 다양한데, 수처리에 사용하는 하이드라진(hydrazine)은 동물의 경우 백혈병 등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참가인 회사에 취업한 이래 13년정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1993. 6. 23. 근무 중 발병하여 1주일여만에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 업무와 함께 수질분석 업무도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앞서 본 도장작업을 하고 나서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엇보이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